

# 울산 뉴시티 에일린의 뜰 1차

## ‘울산 뉴시티 에일린의 뜰 1차’에 당첨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.

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2조 제3항에 의거 귀하의 입주대상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- ※ 입주대상자(당첨자/예비당첨자)는 계약체결 전 서류제출 기한 내에 청약신청 유형별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시어 최종 입주대상자(당첨자/예비당첨자)로 선정되어야 하며, 서류제출 기한 내에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제출하신 자격확인 서류는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의 무주택기간, 주택소유 여부, 세대원의 당첨사실 등의 전산 검색결과를 토대로 입주대상자(당첨자/예비당첨자)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 적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.
- ※ 당첨자 서류검수 결과에 따라 당첨자 및 부적격 의심자로 판정될 수 있으며, 부적격 의심자로 통보한 날부터 7일간의 소명기간이 주어지며 소명사실이 부적합하거나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, 해당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 되오니, 이점 양지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부적격자로 최종 분류되신 경우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간 전산에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역은 1년, 수도권 외 6개월, 위축지역 3개월(‘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) 동안 다른 분양 주택(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)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.
- ※ 정당한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며, 계약체결 이후라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 불이익(당첨 및 계약취소, 당첨일로부터 당첨제한 등)이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, 아래기간 내 주택전시관에 방문하시어 당첨 유형별 관련 서류 및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.

### ■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방법

제출방법	견본주택 방문제출
제출기간	정당 당첨자 : 2021년 04월 19일(월) ~ 04월 22일(목) (10:00 ~ 17:00) 4일간 예비 당첨자 : 2021년 04월 23일(금) ~ 04월 25일(일) (10:00 ~ 17:00) 3일간
제출장소	울산 뉴시티 에일린의 뜰 견본주택 : 울산시 남구 삼산로 248 / (현대백화점 사거리) ※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문의전화	052-282-6000(문의 전화가 많아 통화 연결이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)
당첨 유형별 자격확인 서류제출	당첨유형별 서류제출 안내 참조

※ 아래의 경우 계약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
- 부적격 소명이 해당 소명기간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
- 적격검수를 수행하였으나 정당계약 종료시점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
- 계약금을 입금하였더라도 정당계약기간 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

### ■ 방문 시 유의사항

- ※ 견본주택 방문 시 검수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신청 자격과 부적격에 대한 소명은 서류 제출 만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, 유선상의 답변은 부정확할 수 있으니, 필히 검수 기간 내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신청 자격 및 소명에 대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※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 제출 후 미계약시에도 반환되지 않고 즉시 파기됩니다.

### [코로나19 관련 안내]

- ※ 견본주택 방문 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.
- ※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.5도가 넘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.
- ※ 방문자 기록 작성 및 체온 측정, 손소독제 사용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.
- ※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임산부, 노약자, 영유아의 방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 자격확인 제출서류 안내(신혼부부 특별공급)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 기준	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신혼부부 특별 공급 자격 확인 서류	○	인감증명서 (본인발급용), 인감도장	본인		※ 주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만 인정되며, 대리인 신청 및 계약 불가)  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※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(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),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통(또는 외국인등록증명원 1통) 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하여 발급 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를 표기하여 “상세”로 발급 • 주민등록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주민등록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(2021.03.25)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 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•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상 “상세” 발급 •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
	○	신분증			
	○	주민등록표등본			
	○	주민등록표초본			
	○	가족관계증명서			
	○	출입국 사실증명원			
	○	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			
	○	혼인관계증명서			
	○	복무확인서			
	○	출입국 사실증명원			
제3자 대리인 제출시 추가 사항	○	주민등록표등본	세대원		
	○	가족관계증명서			
	○	건강보험자격 특별확인서			
	○	소득증빙서류			
	○	재직증명서			
	○	비사업자 확인각서			
	○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		
	○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			
	○	임신증명 및 출산 이행 확인 각서			
	○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		
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(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)	○	위임장	청약자		•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발급용)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제출
	○	대리인 신분증, 도장			•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, 주택전시관 비치
	○	건물등기부 등본/ 건축물 대장	해당 시		•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
	○	무허가건물확인서			• 건축물 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 -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
	○	소형·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			•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-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
	○	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			•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-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
	○	사업주체가 요구 하여 인정하는 서류			• 전산 검색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

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습니다.

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※ 주민등록표등본·초본 발급 시 반드시 “세대주 성명 및 관계”에 대한 모든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

- 세대 구성 사유,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, 현 세대원의 전입일/변동일/변동사유.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

※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

-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,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(전체 포함),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

※ 본 안내문은 편집과정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# 소득기준 및 소득증빙서류(신혼부부 특별공급)

## 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

소득기준 공급유형	소득 적용기준	월평균 소득기준 비율	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					
		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
우선공급 소득기준	외별이	100% 이하	6,030,160원	7,094,205원	7,094,205원	7,521,048원	7,947,891원	8,374,734원
	맞벌이	120% 이하	7,236,192원	8,513,046원	8,513,046원	9,025,258원	9,537,469원	10,049,681원
일반공급 소득기준	외별이	100%초과 ~ 140%이하	6,030,161원 ~ 8,442,224원	7,094,206원 ~ 9,931,887원	7,094,206원 ~ 9,931,887원	7,521,049원 ~ 10,529,467원	7,947,892원 ~ 11,127,047원	8,374,735원 ~ 11,724,628원
	맞벌이	120%초과 ~ 160%이하	7,236,193원 ~ 9,648,256원	8,513,047원 ~ 11,350,728원	8,513,047원 ~ 11,350,728원	9,025,259원 ~ 12,033,677원	9,537,470원 ~ 12,716,626원	10,049,682원 ~ 13,399,574원

❖ 기준소득 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% 초과시 일반공급 30% (상위소득) [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(월평균 소득기준 120%초과 ~ 160%이하)]을 선택하여야 함.

❖ 상위소득 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.

※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→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+ {1인당 평균소득(426,843) \* (N-8)} ※ N → 9인 이상 가구원수

※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(만 19세 이상)의 합산 소득입니다.

(단, 세대원의 실종·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,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)

※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 ÷ 근무월수를 말하며,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
상의 총급여액(21번)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,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 근무 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 월수를 기준으로 하며,

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
※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. (단,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)

## ■ 신혼부부 소득입증 제출서류

해당자격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 [전년도 휴직 기간이 없는 경우]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서 [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] ① 재직증명서(휴직 기간을 명시하여 발급) ②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(매월 신고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)	① 해당 직장 ② 세무서 / 해당직장
	신규 취업자 /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	①,② 해당직장
	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	①,② 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보육교사, 학원강사 등) ① 재직증명서 ②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근로소득자급조서)	①,② 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	①,② 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 ※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 제출 ② 소득사실증명서(신고사실없음)	① 세무서
	신규사업자 (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)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② 사업자등록증	① 국민연금 관리공단 / 세무서 ② 세무서
	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	① 세무서 ② 등기소
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	① 해당직장 / 세무서 ② 해당직장
	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	① 주민센터
비정규직 근로자/일용직 근로자	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※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	① 해당직장 ※ 국민연금 관리공단
무직자	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 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②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(신고소득사실없음)	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/ 홈택스

※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 03. 25.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등을 전체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함.

※ 해당직장 및 해당기관에서 발급받는 서류에는 '직인날인'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

※ 사업주체는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.